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문개정 2008년 12월 8일 조례 제1000호
일부개정 2012년 6월 22일 조례 제1223호
일부개정 2015년 2월 23일 조례 제1388호
일부개정 2016년 11월 14일 조례 제1528호
일부개정 2017년 11월 14일 조례 제1623호
일부개정 2018년 4월 16일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2, 2019. 7. 19>

제2조(복무선서) ① 오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6. 11. 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2. 6. 22>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6. 2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근무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6. 11. 14>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4>

제9조 삭제 <2019. 7. 19>

제10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

독을 받는다. <개정 2019. 7. 19>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 7. 1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1. 14, 2019. 7. 1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4>

제12조(해임, 파면,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 파면,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4>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 11. 14, 2019. 7. 19>

제2장 삭제 <2012. 6. 22>

제14조 삭제 <2012. 6. 22>

제15조 삭제 <2012. 6. 22>

제16조 삭제 <2012. 6. 22>

제17조 삭제 <2012. 6. 22>

제3장 휴가

제18조 삭제 <2019. 7. 19>

제19조 삭제 <2019. 7. 19>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 6. 22]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4, 2019. 7. 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6. 11. 14, 2019. 7. 19>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9. 7. 19>

⑤ 삭제 <2019. 7. 19>

⑥ 삭제 <2019. 7. 19>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7. 19>

② 삭제 <2019. 7. 19>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6. 11. 14, 2018. 4. 16>

④ 제22조제1항에 따라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2〉

제22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4, 2018. 4. 16, 2019. 7. 1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2019. 7. 19〉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23조 삭제 〈2012. 6. 22〉

제2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으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② 삭제 〈2019. 7. 19〉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7. 11. 14〉

④ 시장은 영 제7조의6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 11. 14, 2019. 7. 19〉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19. 7. 19>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6일 이 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1.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2. 정부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 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1회 5일 이 상(남은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는 그 남은 일수)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2017. 11. 14, 2019. 7. 19>

1.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30년 이상: 20일
4. 삭제 <2019. 7. 19>

⑧ 장기재직휴가는 제7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퇴직 예정일 6개월 전까지)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9>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 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 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⑩ 풍해·수해 및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⑪ 삭제 <2019. 7. 19>

⑫ 삭제 <2019. 7. 19>

⑬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 격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⑭ 삭제 <2019. 7. 19>

⑮ 공무원은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2. 23>

⑯ 삭제 <2019. 7. 19>

⑰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9>

제25조 삭제 <2012. 6. 22>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2012. 6. 22>

제28조 삭제 <2012. 6. 22>

제29조 삭제 <2012. 6. 22>

제5장 삭제 <2012. 6. 22>

제30조 삭제 <2012. 6. 22>

제6장 보칙

제31조 삭제 <2016. 11. 14>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3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4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7항의 장기재직휴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장기재직휴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 11. 14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6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7. 19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 6. 22〉

선 서 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신설 2012. 6. 2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사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들을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개정 2019. 7. 1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조부모 · 외증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조부모 · 외증조부모 · 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표 4] 〈신설 2012. 6. 22〉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